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6 선고 2020가단52884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상, 백준기, 오정경, 노은정, 박승수, 서하운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3. 29.

판 결 선 고 2021. 4. 2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275,715원과 그중 12,092,305원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1. 2. 5.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서산시 C 임야 19029 m² 중 피고 A 4/1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6. 4. 접수 제20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김진영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한 피보증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 18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해 행위 수익자입니다.

2. 신용보증약정 및 각 대출의 실행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D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A의 거래은행에 피고 A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6. 20. 피고 A이 위 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15,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14,250,000원, 보증기한은 2024. 6. 18.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2019. 6. 20.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보증의뢰인인 피고 A은 2020. 4. 21.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A이 위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20. 8. 7.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2,349,885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가 2020. 8. 7. 257,58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12,092,305원(12,349,885원 - 257,580원)이 되었습니다.

나. 대지급금

원고는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 10. 16. 183,41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손해금율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상권관리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정한 손해금율은 2020. 8. 7.부터 현재까지 연 7%(단 2020. 1. 1. 이후 발생한 대위변제 증 보증부대출 주채무 약정금리 연 7% 초과건은 연 9%)입니다.

4. 관할법원의 합의

원고와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원고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원고의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 거래영업점(거래영업점이 이관된 경우 이관받은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원고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른 영업점으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받은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중 원고가 선정하여 제소하는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가. 처분행위

피고 A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20. 6. 4. 접수 제20944호로 갑구19번A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판결, 대법원2008.12.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참조).

2) 구체적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있던 2019. 11. 29. 이전인 2019. 6. 20. 이미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② 피고 A이 2020. 4. 21.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함에 따라서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의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③ 실제로 2020. 8. 7.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

3) 가사 사해행위 당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8. 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 12,349,885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성권을 취득하였고, 그 구상권 범위 내에서 위 은행의 대출금채권은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11. 29. 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나202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의 부동산의 담보제공행위(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

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아울러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때 수익자 혹은 전득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으로, 피고 A은 ① 20,635,893원(4,880원 $\times$ 19029㎡ $\times$ 4/18(A 지분), 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 반해,

② D은행에 대한 보증부 대출금채무 12,750,000원(원고의 보증서 담보), E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대출금채무 15,000,000원, F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채무 26,900,000원, G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채무 13,000,000원 등 합계금 67,650,000원(12,750,000원 + 15,000,000원 + 26,900,000원 + 1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 중에 있었는데, 피고 A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A이 피고 B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결론

따라서,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대지급금을 합한 12,275,715원(12,092,305원 + 183,41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인 12,092,30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8. 7. 부터 이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마땅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